

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[별표 32]

도로외의 장소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자동차의 표시

(제114조제3항관련)

(단위 : 밀리미터)



주 : 도색은 백색바탕에 흑색일 것